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23 선고 2018가단5008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19. 5. 9.

판결 선고2019. 5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,842,750원과 그 중 280,132,650원에 대하여 2018. 7.

1.부터 2019. 3. 21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주식회사 C, D에 대하여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나. 피고 E에 대하여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유영일

별지